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 이후 논의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3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홍지기술산업(주)(노삼경, 박문상) ② (주)오성(지덕진)
③ 벽산엔지니어링(주)(김동운) ④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유태원) ⑤ (주)건화(최진상)

나. 전화번호 : ① 02-539-5347 ② 054-337-1603 ③ 02-767-5670 ④ 02-6333-3000

⑤ 02-6938-7884

2. 명칭 : 횡보강재와 종보강재가 커플러에 의해 T형 구조로 결합되어 전면블럭과 앵커블럭을 일체화시키는 블록식 옹벽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복수의 전면 블럭은 횡보강재에 의해 상호 결합되고, 전면블럭의 후방에 설치되는 앵커블럭은 커플러에 의해 횡보강재의 후방으로 돌출 결합된 종보강재에 연결되는 블록식 옹벽 공법으로서, 복수의 전면블럭의 결합력을 향상시키고, 앵커블럭으로 옹벽의 지지력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범위>

복수의 전면 블럭은 횡보강제에 의해 상호 결합되고, 전면블럭의 후방에 설치되는 앵커블럭은 커플러에 의해 횡보강제의 후방으로 돌출 결합된 종보강제에 연결되는 블록식 옹벽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4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을 보고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66호, 2019. 8. 27. 공포)됨에 따라 항공안전의무보고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 1) 항공안전의무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안 제26조 제10항제2호)
- 2)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안 제26조제10항제5호)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